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9호 2026. 9. 28.(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
- 202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결과 고시 18
-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9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7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4
-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4
-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초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초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내 개선 권고사항(관사 구분 폐지, 사용목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준용 규칙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련 근거

- 「초지법」 제1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9. 28. ~ 2026. 10. 19. (22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9.까지 목포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061-270-3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를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3조제4항 중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를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로 한다.

제50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중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를 “시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3.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3.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과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략)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 ----- ----- -----. 1.·2.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 7. (생략)

8.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1. ~ 6. (현행과 같음)

7.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2. ~ 7. (현행과 같음)

8. -----

-----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1급 관사 : 전용면적 150㎡
2. 2급·3급 관사 : 전용면적 85㎡

② -----

---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

제50조(정의) -----
----- 소속 직원-----
-----.

제51조(관사의 구분) <삭 제>

제51조의2(관사의 면적) <삭 제>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제52조(사용허가) <삭 제>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삭 제>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

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2. -----
-----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삭 제>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4. -----
----- 경비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

<삭 제>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안 제4조 제5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월 5만원 지급
- 시행일(부칙)
 -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예산 수립 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20일)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0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u>참전유공자</u> 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3·4·10, 개정 2018.5.8., 2020.5.25.>	제3조(지원대상자) ----- ----- <u>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사업)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고시

목포시의회 제408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한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목 포 시 장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결 산 액		잉 여 금				
		세 입	세 출	계	다 음 년 도 이 월 금	보 조 금 반 납 금	지 정 재 원 잉 여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387,268	1,385,896	1,221,632	164,263	122,999	15,151	1,709	24,403
일 반 회 계	1,252,559	1,254,671	1,116,170	138,501	103,059	15,050	1,209	19,18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8,309	103,276	84,840	18,435	15,386	-	-	3,049
기 타 특 별 회 계	26,400	27,948	20,622	7,327	4,555	101	500	2,171

2. 2025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단위:백만원)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비 용	총 수 익	재정운영결과
4,847,815	185,851	4,661,964	1,116,646	1,090,911	25,734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처리기준 명시(안 제4조제2항)
- 신청인 동의 절차 및 미동의 시 구비서류 직접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10. 19. (22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431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에너지보급팀(☎061-270-3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고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u>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 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 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u>제출하</u> <u>고</u>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 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 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u>제출</u> <u>한다.</u> <u><신 설></u> <u><신 설></u> <u>② (생 략)</u>	제4조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 ----- ----- ----- <u>제출하</u> <u>여야 한다.</u> <u>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u> <u>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u> <u>「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u> <u>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u> <u>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u> <u>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u> <u>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u> <u>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u> <u>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u> <u>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u> <u>여야 한다.</u> <u>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u> <u>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u> <u>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 “시</u> <u>장” 이라고한다)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수행,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6조)
-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센터 운영의 탄력성 확보 (안제8조제1항)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월) ~ 10. 19.(월) / 21일 간

8.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도시재생과 재생전략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061-270-3253), 직접 방문 등

9. 기타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061-270-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의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략)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조례」 개선요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 징수 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규제 해소 권고에 의한 납부방법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 단위단가의 생산자 물가상승률(α) 산정방법 개선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유발하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적용 단위단가 단서조항 신설
- 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명확화
- 단계적인 개발이나 분할 인·허가를 통한 부담금의 의도적인 회피방

지 위한 조항 신설

- 원인자부담금 사용 기준 제시
- 중기·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카드납부 방법 신설
- 다자녀 가정 감면 조건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산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10. 19.(21일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6),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061-270-8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용카드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등을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원인부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1년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분할 납부 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분할협의를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의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시 부과하고 준공**”을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고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허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있는**”을 “있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

1. 관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토 처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2. 펌프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3.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제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침사지 역사이편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수전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하수처리장 송풍동의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랙보수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신용카드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등을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나. (생략)

<신설>

3. (생략)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생략)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용도 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에 분과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4. ----- 원인자부담금 -----

-----.

5. (현행과 같음)

6. -----
-----.

가. -----

----- 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 일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 설>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단서 신설>

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나. 분할 납부 시 징수(납부)시기
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분할협의를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의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다
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증설되는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③ (생략)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6. (생략)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준공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
용하고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허가 -

제24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있고 같
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별표 4]<개정 2011.10.1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α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4]<개정 2011.10.1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R(\%)$: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 사용기준

1. 관로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토 처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오·우수 분리벽 설치	하수도 준설물 처리
	하수암거 보수(수선)공사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토 운반
	하수관로 보수(수선)공사

2. 펌프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펌프장 펌프 제작 구매 설치	노후 유입펌프 수선공사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우수 조정지펌프 수선공사
펌프장 조목스크린 제작 구매 설치	초기우수처리 펌프 수선
펌프장 호이스트 교체 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수리
중계펌프장 배기 팬 증설 및 시설물 설치공사	펌프장 수중사류펌프 2호기 수리
중계펌프장 운영 판넬 및 전기실 CCTV 설치공사	펌프장 신설수중펌프 회전자수리
펌프장 ALTS(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체공사	펌프장 집수정 침사물 준설공사
펌프장 펌프기동반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중계펌프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공사	

3.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사용 가능	원인자부담금 사용 불가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염색펌프장 펌프2호기 수리 공사
처리장 기존염색라인 펌프 교체설치	유입펌프 및 냉각수펌프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송수관로 가압펌프 설치	유입침사지 소모성 부품 구매
처리장 송풍기 교체설치	침사지 역사이편 권양기 수선
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기 현장 제어반 구매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제거펌프 수선공사
처리장 공장 초침 레이크스크린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 인양기 및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소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수선공사
처리장 슬러지 펌프 교체	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부품제작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 펌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부품 구매
하수처리장 탈수동, 소화 농축조 탈취설비 설치공사	처리장 초침 및 잉여슬러지 펌프 부품 제작 구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 수선공사
하수처리장 2단계 5계열 용존산소 계측기 교체	하수처리장 송풍기 정기수선
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교체	하수처리장 염소소독시설 수선공사
처리장 TMS관제시스템 데이터로거 교체	하수처리장 슬러지 계근대 개선 공사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하수처리장 수전설 메인고압 변압기(154kv) 수선
처리장 낙뢰방지 설비 공사	하수처리장 송풍동의 무정전 축전지 구입
	수질계측 기기 소모품 및 수선비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지붕층 방수도장 공사
	하수처리장 창호 교체 및 도장공사
	하수처리장 건축물 균열 및 누수 보수
	탈수기동 옥상방수면 크랙보수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
- 다자녀 가구의 감면 방식 개정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산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10. 19.(21일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6),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061-270-8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시행규칙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을 따르며 타행위에 대해서 조례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개산액을 통보받은 후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별지21호 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개산액의 25퍼센트 씩 1회차는 계획인가 후 6개월 이내에 2회차는 공정률 20퍼센트 도달 시 3회차는 공정률 50퍼센트 도달 시 납부하며, 최종납부는 준공허가(임사사용승인 포함)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최종정산한 후 납부한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허가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허가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7항 전단 중 “하수도 요금의 15%를”을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본항신설 2022.1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시행규칙 별지[신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전 자 우 편 주 소			
	주 소 (사 업 위 치)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신청내용	분납일자		분납금액		비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제1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② (생략) ③ <u>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u> 1. <u>1회차(25퍼센트): 실시계획 인가 후 6개월 이내</u> 2. <u>2회차(25퍼센트): 공정률 20퍼센트 도달시</u>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을 따르며 타행위에 대해서 조례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개산액을 통보받은 후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별지21호 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u> 2. <u>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개산액의 25퍼센트 씩 1회차는 계획인가 후 6개월 이내에 2회차는 공정률 20퍼센트 도달 시 3회차는 공정률 50퍼센트 도달 시 납부하며, 최종납부는 준공허가(임사사용승인 포함)전에 원인자부담금을</u>

3. 3회차(25퍼센트): 공정률 50퍼
센트 도달시

4. 4회차(25퍼센트): 공사준공(승
인)이전

<신 설>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① ~ ⑥ (생
략)

⑦ 조례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
는 세대는 하수도 요금의 15%를 감
면한다. <본항신설 2022.12.19.>

⑧ · ⑨ (생 략)

최종정산한 후 납부한 금액을 제
외 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삭 제>

<삭 제>

④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허가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허가 부서에서는 원인자부
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 감면)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 -----. 다만,
사용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본항신설 2022.12.19.>

⑧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21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자우편 주 소	
	주 소 (사 업 위 치)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신청 내용	분납일자	분납금액		비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제1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2차)(보건복지부, 2026. 8.)에 따른 필수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

- 제1조(목적)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근거 명시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거 명시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정비

- 협의체 구성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4. 조례 개정(안) : <붙임>

5.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6. 사전협의(승인) 사항 : 감사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예산사항(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8.(20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8일 18:00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통합돌봄팀)

- 주소 : (우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일로 203, 노인장애인과
- 전화 : 061-270-3354, 팩스 : 061-270-3582
- 이메일 : dkdlel6541@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3353)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쇠</u>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노쇠</u> ----- -----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u>지역</u>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u>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u>시장</u>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u>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⑤·⑥ (생략)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
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
직)에 소속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기능 정비(안 제3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비
 - 사후 추인, 면책 건의, 법률 지원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추가된 심의사항 반영
- 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회의 관련 인용 조문을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8. 입법예고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9.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213).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를 “제10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제8조 중 “제7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u>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 ----- ----- <u>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를 둔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u> 의 사항	2. ----- ----- <u>제10조 제1항 각 호</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4항부터 <u>제7항</u> 을 적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 --- <u>제8항</u>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 명칭 등을 사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라남도 명칭 등 정비 :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 전라남도, 도, 전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지사, 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약칭: 통합특별시장)
 - 도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약칭: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 도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약칭: 통합특별시비)
 - 도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약칭: 통합특별시세)

- 정부부처명 정비 :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9.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213).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2】

목포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도·감사원·안전행정부·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원·행정안전부·그”로 한다.

제2조(「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정부·전라남도”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비·도비”를 각각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4조(「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5조(「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목포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정부·전라남도**”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도의원**”을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0조(「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국가·전라남도·목포시**”를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목포시·전라남도**”를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목포시 공인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개정)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지사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로 한다.

제17조(「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0조(「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3조(「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4조(「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 기본계획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에”로 한다.

제25조(「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6조(「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7조(「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8조(「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9조(「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목포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1조(「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마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2조(「목포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목포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3조(「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4조(「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5조(「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가·전라남도·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6조(「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7조(「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의 개정)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전라남도 도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8조(「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9조(「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1조(「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3조(「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수립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4조(「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의 개정)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라남도**”를 “**산업통상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5조(「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6조(「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7조(「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로 한다.

제48조(「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9조(「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의 개정)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0조(「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1조(「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2조(「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3조(「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4조(「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전라남도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5조(「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6조(「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7조(「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남도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로 한다.

제2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8조(「목포시 건축 조례」의 개정)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9조(「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1조(「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2조(「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무형유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3조(「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4조(「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5조(「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66조(「목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7조(「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8조(「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9조(「목포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목포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관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리**”로 한다.

제70조(「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전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1조(「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2조(「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3조(「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4조(「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5조(「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6조(「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7조(「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8조(「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9조(「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남도(이하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0조(「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기관·전라남도(이하 “도”**”를 “**국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도**”를 “**국가·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도**”를 “**국가·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1조(「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2조(「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에 행위로 본다.

【붙임 3】

제1조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무) ①·② (생략) 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생략) 2. <u>도·감사원·안전행정부·그</u> <u>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u> <u>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u> <u>항</u> 3. ~ 7. (생략)	제5조(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원</u> <u>·행정안전부·그</u> ----- ----- 3. ~ 7. (현행과 같음)

제2조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 치법」 제21조에 따라 <u>전라남도</u> <u>지사</u>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 민의 수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장</u> ----- ----- ----- ----- ----- -----.

제3조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u>전라남도</u>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 ----- ----- -----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 타당성 가. 지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u>정부·전라남도</u> 사업과의 연계성 나.·다. (생략) 3. ~ 5. (생략)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 ----- ----- -----.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이	제7조(의회 보고) ① ----- ----- -----

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목포시(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② (생략)

-----.

-----.

1. -----
----- 국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2. -----
--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액 국비 또는 <u>도비</u> 로 시행 하는 용역	2.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비</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 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규칙) 규칙 전문에는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 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u>도지사</u> 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 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 야	제4조 (규칙)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제6조 목포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 (직무 발명상황 통고) 시 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 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발 명에 관한 사항을 <u>전라남도지사</u> 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직무 발명상황 통고) ---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

제7조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u>정부·전라남도</u>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3. (생략) ⑥ (생략)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u>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2.·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u>도지사</u>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제8조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이하“협의 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 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 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 다.	제2조(정의) ----- ----- ----- ----- ----- --.
1. <u>전라남도</u> 목포시	1.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2. <u>전라남도</u> 나주시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3. <u>전라남도</u> 담양군	3.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4. <u>전라남도</u> 화순군	4.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5. <u>전라남도</u> 영암군	5.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6. <u>전라남도</u> 무안군	6.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7. <u>전라남도</u> 함평군	7.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8. <u>전라남도</u> 장성군	8.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제9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단)장으로 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원, <u>도의원</u>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u>통합특별시의회</u> 의 <u>원</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	②-----

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 7. (생략)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u>도지사가</u>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	4.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산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사항으로서 <u>도지사</u> 또 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 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5. (현행과 같음) 6. ----- ----- <u>전남광주통</u> <u>합특별시장</u> ----- ----- -----
--	--

제12조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u>도지사</u>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조정) 시장은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u>도지사</u>와 협의하여 <u>도</u> 지역정보화부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시의 시행계획 중 <u>도지사가</u>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제6조(지역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조정)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과 협의하여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이 ----- -----.

**제13조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 5. (생략) 6. <u>국가·전라남도·목포시</u>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8. (생략)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u>목포시·전라남도</u> 및 민간업체 등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생략)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시</u> ----- 7.·8. (현행과 같음) 9. -----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
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거쳐 관
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장을 -----

-----.

제17조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생략)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①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 터 <u>전라남도</u>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①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 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 으로 설립하여 <u>전라남도</u> 에	3. ----- ----- ----- <u>전남광주통합</u>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u>특별시</u> ----- -----.
--------------------------	----------------------------

제19조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 고 중앙정부와 <u>전라남도</u> 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 ----- ----- ----- <u>전남광주통합특 별시</u> -----.

제20조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생 략) 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 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 재하고 매월 30일까지 자체 처 리분과 상급기관 처리분으로 구 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시장 에게 보고한다. 시장은 보고된 건의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u>전라남도지사</u> 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 ⑧ (생략)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시장은 <u>전라남도지사</u> 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 ----- ----- -----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
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
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
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

제23조 목포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u>광주광역시, 전라남도</u> 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 -----.

제24조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u>전라남도 기본계획</u> 을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u> <u>에</u> ----- -----

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u>전라남도</u>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u>전라남도</u> 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3조(기능) ----- -----.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2. ~ 5. (현행과 같음)

**제27조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② (생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체 구성) ①·② (생략)	제10조(협의체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u>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u> 및 목포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 (지명선정과 고시) ① 시장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명을 정하고 이를 <u>전라남도</u>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명선정과 고시) ①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5.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u>통합특별시장</u> (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24조(설립)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9	제24조(설립) ①----- -----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
을 위하여 목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와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 라. (생략) 마.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제7조(사용료 등 감면)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 -----

**제32조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① ~ ④ (생략)	제8조(관람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 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 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 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 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 다.	⑤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지방문 화원진흥법」(이하“법”이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 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1. -----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장</u> -----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 는 문화원을 말한다. 2. 3. (생 략)	----- -----. 2. 3. (현행과 같음)
---	---------------------------------------

**제34조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 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u>전라남도지 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이하 “통합특별시장” 인)----- ----- ----- -----.

**제35조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u>국가·전라남도·지방자치 단체</u> 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 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사용 료를 면제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u>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자치단체</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u>전라남도지사</u>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제13조(사업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2. <u>전라남도</u> 및 정부의 지원금 3. 4. (생략)	제13조(사업비 등) ----- -----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3. 4. (현행과 같음)

제37조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삭제 3. <u>전라남도 도의원 1명</u>	제4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3.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u>

4. ~ 8. (생 략)	원 -----
⑤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구성) ① (생 략)	제5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u>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이 된다.	②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u>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 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 ----- ----- ----- -----.

제39조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조(겸직 금지)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u>전라남도</u> 대표에 선발 3.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3. (현행과 같음)
--	--

제40조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① 시장은 <u>전라남도</u>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①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제13조(운영경비 등) ----- ----- -----. 1. (현행과 같음)

2. 정부 및 <u>전라남도의</u> 지원금	2.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42조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u>전라남도</u>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조정에 대한 불복) -----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u> ----- -----.

**제43조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가</u> 수립한 <u>전라남도</u>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목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수립한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 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 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u>전라남도</u> 가 지정한“예비사회기업”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 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 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u>전라남도</u>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 사. (생략) 3. ~ 6. (생략)	----- -----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u>----- 다. ----- ----- -----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라. ~ 사.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	--

제45조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 (소비자 피해조정) ① (생략) ② <u>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라남도</u>와 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제18조 (소비자 피해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업통상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u>전라남도</u> 내를 우선으로 한다.	6. ----- ----- <u>전남광주</u> <u>통합특별시</u> -----.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47조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	2. ----- ----- -----

5조에 따라 <u>도지사가</u> 지정 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 4. (생략)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이 -----. 3. · 4. (현행과 같음)
---	---

제48조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전라남도</u> 및 목포시 출연기 관 4. (생략) ② (생략)	제4조(관리위탁)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3조 (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u>전라남도</u> 및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9. ----- ----- ----- -----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51조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u>전라남도교육감</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시장을 경유하여 <u>전라남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u>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1. ~ 5. (생략)

②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 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생략) 2. 정부 및 <u>전라남도</u> 의 지원금 3. 4. (생략)	제13조(운영경비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3. 4. (현행과 같음)

**제53조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 <u>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u> 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 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u> <u>“통합특별시장”</u>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 리) ①·② (생 략)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 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 <u>도지사</u> 에게 제출하는 제1항 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 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통합특별시장</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면 지체 없이 <u>전라남도 도지 사</u>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 서의 장, 목포경찰서, 목포해양 경찰서장, 목포소방서장 등 관 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 ----- ----- <u>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u> ----- ----- ----- -----.

제55조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u>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 ----- ----- -----.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u>전라남도지사</u>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57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u>도지사</u> 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 ----- -----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 ----- -----.
1. <u>전남도보</u>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1.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u>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u>전라남도</u>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5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전라남도</u>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4.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u> ----- ----- -----. 제56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3・4. (현행과 같음)
---	--

제58조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생략)	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u>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u>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⑤ (생략)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u>전라남도</u>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2.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건축위원회</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59조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

체평가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전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u>도지사</u>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체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u>전남광주통합특별 시장</u>-----.
--	---

제60조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u>도지사의</u>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 3. (생 략)	제15조 (수입금 마련지출)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① ~ ④ (생 략) ⑤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5조(관람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이 -- ----- ----- ----- ----. -----

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생 략)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생 략) ② <u>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u> 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62조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u>전라남도무형유산</u> 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목포시에서 보존·전승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형유산</u> ----- ----- ----- ---.

**제63조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 결정) ① (생략)	제4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라남도지사</u>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제64조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u>전라남도지사</u>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황보고) ①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①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

1. ~ 3. (현행과 같음)

제66조 목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훈련) ① (생략)	제5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u>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u> 의 본부장(이하 “ <u>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u>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u>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 ----- -----.
제7조(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	제7조(위험도평가지원요청등)
①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	① -----

협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u>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 3. ~ 16. (생략) ③·④ (생략)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3. ~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8조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u>전라남도</u>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u> <u>시</u> ----- ----- ----- -----. 2. (현행과 같음)

**제69조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u>도관리</u>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2조 (시관리 방조제) ----- -----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관리</u> ----- ----- ----- -----.

**제70조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u>전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u> 의 위원 3. ~ 8. (생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u> ----- ----- 3. ~ 8. (현행과 같음)

**제71조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략) 6. 국가 또는 <u>전라남도</u> 로부터의 보조금 7. (생략)	제2조(기금의 재원)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7. (현행과 같음)

제72조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생 략) ③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u>전라남 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 례</u>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 리규정」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 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 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7. (생 략) ⑤ · ⑥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u> 」----- ----- ----- ----- -----.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 ----- 7.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판매가격) CNG 가스 판매	제10조(판매가격) -----

가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
적인 가격은 따로 정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제74조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 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 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 고자 <u>전라남도지사</u> 에게 등 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u> 장----- -----. 4. ----- ----- -----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
<u>전라남도지사</u> 에게 등록한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자를 말한다.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75조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u>전라남도</u> 의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제76조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목포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u>전라남도지사</u> 로부터 합동단속의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은-----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포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u>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u> 교육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u>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u> 및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 -----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u> ----- -----.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교육지원청-----

-----.

제78조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u>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u> ,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u>목포교육지원청</u> ----- ----- ----- -----.

제79조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 제 ② 국가기관 또는 <u>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u> ,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u>도</u> ,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삭 제 3. (생략) ④ (생략)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②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u> ----- ----- -----. ③ ----- ----- ----- ----- ----. 1. ----- <u>통합특별시</u> -----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u>국가기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u>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u>국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u>

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

는 공연 및 행사

2.·3. 삭제

4. (생략)

③ (생략)

제21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생략)

-----.

② -----

-----.

1. 국가·통합특별시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사용료 감면) ① 국가·통합특별시 -----

-----.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관람료) ① ~ ③ (생략)	제5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한 사람에	④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이 -----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생략) ② <u>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u>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 -----. ----- -----.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82조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① ~ ③ (생략) ④ <u>전라남도지사가</u>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생략)	제6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이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생략)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관련 현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 9. 30, 2005. 7. 28, 2012. 3. 30., 삭제 2018. 5. 8., 개정 2019. 1. 28.〉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관련)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제14조 관련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 9. 30, 2005. 7. 28, 2012. 3. 30., 삭제 2018. 5. 8., 개정 2019. 1. 28.〉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관련)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 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제15조 관련 현행〉〔별표 2〕〈개정 2009.4.20〉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 목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기에 우리시와의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고자 시민의 뜻을 모아 명
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목 포 시 장 ○ ○ ○ ①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규격변형가능	◦ 바탕 : 노란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 목포시 로고를 이용한 문양 ◦ 글씨 : 검정색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 목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기에 우리시와의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고자 시민의 뜻을 모아 명
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목 포 시 장 ○ ○ ○ ①인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규격변형가능	◦ 바탕 : 노란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 목포시 로고를 이용한 문양 ◦ 글씨 : 검정색

〈제21조 관련 현행〉 [별표] <신설 2021.2.8.>

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고 등 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대학생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21조 관련 개정안> [별표] <신설 2021.2.8.>

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고 등 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대학생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통합특별시 대표급, 통합특별시 장 또는 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통합특별시장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10kg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10kg 이상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	-	해당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50조 관련 개정안〉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10kg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10kg 이상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	-	해당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관련 현행〉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부서간 분담 사무<개정 2013.6.19, 2013.12.23, 2022.12.19.>

1. 기후환경과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실적관리 및 보고(도지사)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2. 회계과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주관과로 제출
 - 구매이행계획 : 매년 1월
 - 구매실적 : 매 익년 3월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권장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류 등 친환경 용지 사용 권장 등

3. 건설과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개정 2011.6.20, 2013.12.23, 2022.12.19.>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집계 및 그 결과를 주관과로 제출(매 익년 3월)
 - 시설·공사 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53조 관련 개정안〉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부서간 분담 사무<개정 2013.6.19, 2013.12.23, 2022.12.19.>

1. 기후환경과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실적관리 및 보고(통합특별시장)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2. 회계과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주관과로 제출
 - 구매이행계획 : 매년 1월
 - 구매실적 : 매 익년 3월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권장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류 등 친환경 용지 사용 권장 등

3. 건설과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개정 2011.6.20, 2013.12.23, 2022.12.19.>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집계 및 그 결과를 주관과로 제출(매 익년 3월)
 - 시설·공사 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수도요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상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여 요금 부과·징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도요금 감면 대상·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요금 감면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하는 결정 기준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효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용 공업 업종을 업종 구분표 상에서 삭제 (안 제27조)
- 누수 감면 대상이 되는 누수 발생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상 누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누수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 다자녀 가구의 사용량에 따른 비율제 감면 방식을 고정 금액 감면 방식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으로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 (안 제37조)

○ 체납에 대한 정수처분 기준을 재규정하여 정수처분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련 부서 의견

- | | |
|------------------|---------------|
| ○ 예산상황 |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 ○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 : 특이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 특이사항 없음 |
| ○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 | : 특이사항 없음 |

6.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수도과(요금팀)
- 주 소 : (우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 5층 수도과
- 전 화 : 061-270-3525 ※ FAX : 061-270-8301
- 이메일 : moonsun1@korea.kr

9.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s://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 (☎ 061-270-3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를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로, “있으며 일반용가구와 관계가 없” 을 “있으며 다른 업종과 1개의 계량기로 함께 계량하” 로,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을 “대해서는 가구당 월15톤의 사용량을” 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지하” 를 “지하 매설 급수관” 으로, “누수로” 를 “내부 누수 등으로” 로,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개수대 등 지상 누수 부분

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인가증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기일내” 를 “기일 내” 로, “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결의후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를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수 용 가	수용가번호		업 종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시설명)		생년월일	
감면사유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성 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목적 :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민감정보(수급자격) *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개인정보 :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격상실·전출 등으로 요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수도과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 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

위와 같이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 인가증 2.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어린이집 설립 인가증 2. 주민등록표 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생략)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구분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타업종의 사용량은 동일 규모의 다른업체의 평균 사용량 범위내에서 분리 적용한다. 다만,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 -----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 ----- -----있으며, 다른 업종과 1개의 계량기로 함께 계량하-----대해서는 가구당 월15톤의 사용량을 --- ----- -----.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생략)

2.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3. ~ 5. (생략)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19세 이하의 3자녀 이상)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 사용료를 15% 감면할 수 있다.

7. ~ 10.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지하 매설 급수관 -- 내부 누수 등으로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개수대 등 지상 누수 부분

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3. ~ 5. (현행과 같음)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40조 (정수처분)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u>기일내</u>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u>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결의후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u> 2. ~ 13. (생략) ② ~ ④ (생략)	<u>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u> <u>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인가증</u> <u>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등본</u> <u>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u> 제40조 (정수처분) ① ----- ----- -----. 1. ----- -----<u>기일 내</u> -----<u>사용요금</u> <u>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u>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 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피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 내용

- 피해보상 대상 범위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야생동물로 확대(안 제2~3조)
-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완화 및 피해보상 하한액 신설(안 제4조)
- 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절차를 정비하여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마련(안 제5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근거 신설(안 제4·7·8·11조)
-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상 결정의 객관성·형평성 확보(안 제12~15조)
- 피해예방·조사·보상·사후관리 등 야생동물 피해관리 체계 전반 정비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 2026. 9. 28. ~ 2026. 10. 19. (22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 4층 기후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피해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13호에 각각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9.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어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보상제외)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피해 대상 작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 물과 햇빛 관리 등 작물의 생육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50m² 미만인 경우
6.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시설하우스(비닐·유리온실 등),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인 경우
8.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통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통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 단계별 산정률을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과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

조 및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농작물 등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시설 설치 완료한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정산·지급한다.

제9조(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1조(피해예방시설 철거 및 관리주체 변경) ①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신청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농업 등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획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10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서

신 고 인 (경 작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피해발생 상 황	피해소재지	(지목: , 지적: m ²)			
	피해발생일시 (피 해 기 간)	년 월 일 ()	가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내 역	구 분	인명 등 피해농작물	피해면적 (m ²)	피해율 (%)
		농작물등			
		인명피해등			진단서 첨부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1.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 설명도) 1부
3. 피해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성별)	
	③ 주 소	시 동 번지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 해 자 성명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내 용		⑧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 피해지역사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 피해액산정방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	⑭ 보상금 산정을			
	⑮ 피 해 보 상 금			
기타 조사 의견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 조사자 의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성별)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지 역		
	⑥ 피 해 면 적	⑦ 가해야생동물	
	⑧ 피 해 내 용		
	⑨ 피 해 보 상 금 산 정 내 역		
	⑩ 피 해 보 상 금		
기타 의견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0 0 0 귀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성별)	
	③ 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 피해보상금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택)	(휴대폰)	
피 해 농 작 물			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역	목포시		
	종 류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설치비용	원	지원금액	원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작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 총 금액 : 원 - 지원금액 : 원 - 본인부담금 : 원		
철거 또는 일부 훼손 사유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변경사유						
「목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장기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조례개정

2.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제1항)

- ①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협의회 임기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10조제4항)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④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8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u>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 <u>법 제3조제4항-</u> ----- ----- ----- <u>「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u>	④ <u>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